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14
----------	------

2014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년 2월 7일, 최호정 의원(10명 찬성)
- 나. 회부일자: 2014년 2월 11일
- 다. 상정결과: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2월 20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호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운현궁)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흡수 및 가족단위 시민의 접근성 향상, 청소년 단체관람 확대 등으로 시민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람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된 조항(안 제37조, 안 제38조)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관련된 조항(안 제73조)을 일부 수정함.
- [별표 2]의 제명인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7조 관련)” 중 “(제37조 관련)”을 “(제41조 관련)”으로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 중 유료관람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을 무료관람으로 변경하여 서울시민의 역사문화 향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청소년 단체관람 확대 등으로 서울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관람객의 서울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조례에서 위임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시 소유문화재로 규정되어 있는 곳은 ‘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운현궁’ 이상 4곳이며, 이 중 운현궁만이 유료관람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의 “제37조” 시 소유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무료관람으로 변경하고, 무료로 변경될 경우 필요성이 없어진 “제38조”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에 관한 조항을 함께 삭제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례 제73조제2항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관람료나 사용료¹⁾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관람료나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에서 관람료와 관련된 제37조를 삭제하고, 사용료와 관련된 제39조만을 남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제73조제2항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3조(과태료)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관람료나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관람료나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3조(과태료)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소유 문화재 명칭과 위치를 명시해 놓은 “[별표 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의 제명 중 “(제37조 관련)”을 “(제41조 관련)”으로 수정함.

<[별표 2] 관련 조문 및 제명 수정안>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37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 소유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 시설(이하 "시 소유 문화재"라 한다)을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생략>	<p><삭제></p> <p>(현행과 같음)</p>
제41조(시 소유 문화재의 운영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시 소유 문화재는 별표 2와 같다. <생략>	
[별표 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별표 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41조 관련)
<p>운현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경희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 일원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1 일원 몽촌토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일원</p>	

1) 붙임1. <현행 조례 제39조 내용>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촬영요금 및 장소사용료(제41조 관련)> 참조

- 현재 운현궁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

<운현궁 관람료 현황>

구 분	일반(25세 이상~64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24세 이하), 군인(제복입은 하사 이하 군인)	
	개인	단체(30인 이상)	개인	단체(30인 이상)
요 금	700원	550원	300원	250원

- 현재 운현궁의 최근 3년간 관람료 징수 및 관람인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3,527만원 징수에 20만 3,263명 입장, 2012년도 3,281만원 징수에 23만 7,603명 입장, 2013년도 3,437만원 징수에 20만 9,170명 입장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람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전체 관람객 수의 약 70% 가량이 무료 관람객으로 나타났음.

<운현궁 최근 3년간 관람료 징수 및 관람인원 현황>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징수금액	3,527만원		3,281만원		3,437만원	
관람인원	203,263명		237,603명		209,170명	
	유료	무료	유료	무료	유료	무료
	59,706명 (29.4%)	143,557명 (70.6%)	76,431명 (32.2%)	161,172명 (67.8%)	56,425명 (27%)	152,745명 (73%)

- 운현궁의 관리는 현재 ‘(주)한국의 장’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리시설 규모는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이고,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계약되어 있음.

<운현궁 시설 및 관리 위탁업체 개요>

구 분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사적 제257호>
규모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이로당, 노략당, 노안당, 수직사, 회랑, 유물전시관)
전시현황	대원군가 유품, 생활가구, 전통복식 등
위탁운영자	(주) 한국의 장
위탁기간	2013. 1. 1~2015. 12. 31 (3년)

-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운현궁의 관람료 수익이 연간 약 3,000만원 수준으로 무료 개방으로 전환할 경우 운현궁을 방문하는 서울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서울시 역사문화 향유 및 관심도 증대, 편의제공 등의 편익이 관람료 수익보다 클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무료 관람객이 약 7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동 조례 제38조에 규정하고 있는 관람료 면제자는 특정된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고, 이는 일반인 및 청소년 등의 관람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에게 서울 역사문화 향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제38조 관람료 면제 대상>

관람료 면제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와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하지만 무료로 개방하여 관람객이 증가할 경우, 운현궁의 시설 훼손에 대한 위험성 증가와 관람 시 혼잡도 증가, 각종 쓰레기 증가, 개장 종료 후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및 보호와 시설 내 공공질서 확립에 대한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에게 무료개방으로 전환 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게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현행 조례 제39조 내용>

제39조(시 소유 문화재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 소유 문화재를 단순관람 목적이 아닌 촬영 및 장소 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 및 사용료의 금액은 시설사용의 유형 및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촬영요금 및 장소사용료(제41조 관련)>

1. 촬영요금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극영화·광고영화 및 TV 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당 50,000원
문화영화·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당 30,000원
광고 선전용 또는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	1시간 및 모델 1명 이내 20,000원	1시간당 10,000원 모델 1명당 10,000원

2. 장소사용료

구 분	기본요금(1시간 이내)	초과요금(1시간당)
장소사용 면적 및 요금	1,650㎡ 미만 360,000원	1시간당 기본요금의 50%
	1,650㎡ 이상부터 3,300㎡ 미만 720,000원	
	3,300㎡ 이상 1,080,000원	

- ※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 ※ 야간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금(초과요금을 포함한다)에 100%를 가산하되 가산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 주야간 구분 : 주간시간은 06:00 ~ 18:00, 야간시간은 18:00 ~ 다음날 06:00로 한다.
- ※ 다만,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의 1시간당 요금은 1㎡당 20원으로 한다.(야간사용료는 요금의 30%를 가산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4
----------	------

발의연월일 : 2014년 2월 7일

발 의 자 : 최호정 의원

찬 성 자 : 이지현, 주찬식, 김용석(서초)
이정훈, 강감창, 전철수
김광수(노원), 강희용,
유청, 김동욱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소유 문화재(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운현궁)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흡수 및 가족단위 시민의 접근성 향상, 청소년 단체관람 확대 등으로 시민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관람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및 면제와 관련된 조항(안 제37조, 안 제38조)을 삭제하고, 과태료와 관련된 조항(안 제73조)을 일부 수정함.
- 나. [별표 2]의 제명인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중 “(제37조 관련)”을 “(제41조 관련)”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2항 중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관람료나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관람료나 사용료의”를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로 한다.

[별표 2]의 제명 중 “(제37조 관련)”을 “(제41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① <u>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 소유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문화재"라 한다)을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금액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관람자의 연령 및 개인, 단체를 구분하여 적정금액으로 한다.</p>	<p><삭 제></p>
<p>제38조(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면제) 시 <u>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12세 이하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추가)와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삭 제></p>
<p>제73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관람료나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관람료나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7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제 3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내야 할 사용료의 -----.</p>

[별표 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
설의 명칭과 위치(제37조 관련)
(생략)

[별표 2] 시 소유 문화재 및 문화재 관련시
설의 명칭과 위치(제41조 관련)
(현행과 같음)